

대학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 정 2016. 8.
개 정 2017. 7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건학이념,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 및 운영하는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‘대학 발전계획’이라 함은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며, 건학 이념을 실현하고,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, 목표, 추진전략, 추진체계, 예산 등을 말한다.

제 2 장 운 영

제3조(조직) ①대학 발전계획의 수립과 실행, 성과 점검 등에 관한 실무는 기획처가 주관한다.

②대학 발전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실행하는 한편 그 성과를 확인하여 대학의 정책과 제도, 교육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발전위원회, 대학평가위원회를 두며, 별도로 대학발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대학발전위원회, 대학평가위원회, 대학발전자문위원회에 관한 구성 및 기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계획 수립) ①대학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.

1. 환경분석(외부환경분석 및 내부여건분석)
2. 구성원 의견 수렴
3. 대학 비전 및 목표
4. 인재상 및 교육목표
5. 전략과제
6.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및 재정운영계획
7. 기타 대학 발전에 필요한 사항

②대학 발전계획은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처에서 계획안을 수립하며 이를 공청회 의견 조정과 대학발전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③수립된 발전전략을 통해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에게 공유한다.

제5조(계획 운영) ①기획처는 매년 학과 및 행정부서와 대학 발전계획 수립과 이행에 관한 전략과제별 성과목표 및 실행 계획을 세워 대학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.

②학과(부) 및 행정부서의 장은 대학 발전계획 및 연도별 전략과제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.

제6조(평가) ①대학평가위원회는 매년 대학 발전계획을 평가하며,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 발전계획 결과 보고서(자체평가보고서)를 대학발전위원회에 보고한다.

1. 대학 발전계획 전략과제별 성과
2. 학과(부) 및 행정부서의 성과지표 평가

3. 구성원 만족도 조사

4. 기타 대학발전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

제7조(개선 및 환류) ①전략과제 이행에 대한 발전계획 결과보고서(자체평가보고서)는 대학 구성원에게 공지한다.

②학과(부) 및 행정부서는 전략과제 이행에 대한 발전계획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획처와 협의하여 차년도 세부전략과제에 개선 및 반영한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6. 8. 29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7. 10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규정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